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4
----------	----

2018. 10. 24.(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8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0월 12일

–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해운 공보관)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계약이 3회차로 종료(2018.12.31.) 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4회차 민간위탁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 1. 1. ~ 2021. 12. 31.)
- 소요예산 : 430,000천원(2018년)
- 위탁 주요사무
 -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주요 도정에 대한 영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무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3년 기한으로 3차까지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계약을 하였으며, 3회차 계약 만료일인 2018년 12월 이전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인터넷방송은 도정소식과 문화·관광 등의 분야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무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
- 다만 앞으로 도정 홍보를 하는 수단 외에 생활정보 등 도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방송으로 운영하여 도민과 진정한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4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10월 일 (제368회)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2일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44호
----------	------

제출연월일 : 2018년 10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인터넷 방송 운영 위탁기간이 종료(2018.12.31.)됨에 따라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9. 1. 1. ~ 2021. 12. 31.)
 - 위탁방법 : 재계약
 - 소요예산 : 430,000천원(2018년)
 - 위탁 주요사무
 -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주요 도정에 대한 영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 ※ 재계약 추진 계획 별첨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그 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은 도정소식과 문화·관광 등 도민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영상콘텐츠 제공으로 도정홍보를 담당하는 사무로서,
-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질 높은 방송콘텐츠 개발과 제공이 요구되는바,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現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간)
- 수탁기관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원장: 전원건)
- 위 탁 비 : 430,000천원(2018년도)
- 직원현황 : 7명(기획·운영 3명, PD 3명, 작가 1명)
- 위탁운영경과
 - 최초위탁: '07.04.~'09.12, - 1차 재계약 : '10.01.~'12.12
 - 2차 재계약: '13.01.~'15.12, - 3차 재계약 : '16.01.~'18.12

나. 관계법령: 별첨



충북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공 보 관

충북인터넷방송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도정소식과 문화·관광·축제 등 도민의 관심분야를 반영한 영상콘텐츠 제공으로 도정홍보를 담당하는「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의 위·수탁 협약 종료(2018.12.31.)에 따른 재계약 추진 계획임.

I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0조

II 現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간)
- 수탁기관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원장: 전원건)
- 위 탁 비 : 430,000천원(2018년도)
- 위탁사무 : 콘텐츠(도장뉴스 기획영상물 등) 제작 및 송출 등 10여개 단위사업
- 그 간의 위탁 경위
 - '05년~'08년 42억원의 국·도비 지원(국32, 도10)으로 구축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멀티미디어센터'의 활용성 제고
 -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중장기적 위탁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수준높은 '인터넷종합방송' 추진
 - 위탁 협약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차수	1차협약	2차협약	3차협약	4차협약
협약기간 (3년)	'07.04.~'09.12	'10.01.~'12.12	'13.01.~'15.12	'16.01.~'18.12
사업비	430 / 598 / 480	450 / 431 / 400	440 / 440 / 440	460 / 400 / 430

Ⅲ 추진계획

1 재계약 개요

① 사업명 :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② 위탁기간 : 2019. 1. 1.~ 2021. 12. 31.(3년)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위탁기간)

③ 위탁사무 : 콘텐츠(도장뉴스 기획영상물 등) 제작 및 송출 등 10여개 단위사업

○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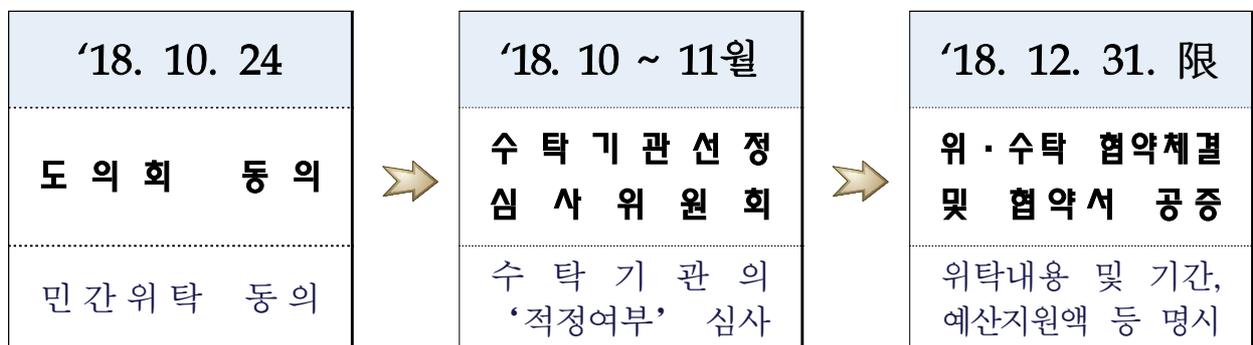
④ 수탁기관 :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5호

※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 대상기관으로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명시

수 위 탁 비 : 연간 450백만원정도(제작비·인건비 300, 운영비 150)

2 재계약 추진일정



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별도 계획 수립 시행

- 기 간 : 2018. 10월 ~ 11월 중
- 구성인원 : 6~9명(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임 기 : 수탁기관 심사·선정 완료시 자동해산
- 선정기준 : 기관 및 기술평가를 포함한 7개 항목
- 선정방법 : 운영성과 등 평가를 거쳐 ‘적정여부’ 판단

② 위탁사무 성과 평가

- 평가결과 상임위원회 제출 및 도 홈페이지 공개

③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일 시 : 2018. 12. 31. 限
- 협약체결 : 도지사 ↔ 수탁기관 대표이사

[협약내용]

- ❖ 위탁계약기간
- ❖ 위·수탁사업 업무내용 및 사업비
-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 수탁사무 수행 기준
-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10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